대전 에테르 스위첸 오피스텔 분양 광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 "대전 에테르 스위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방문을 각 일정별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방문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분양일정 및 상품관련 등의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www.대전에테르스위첸.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견본주택 관람은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방문관람이 우선하며, 홈페이지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 후 방문 가능합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일정에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하며, 예약일자 및 시간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본인 외 1인가족 1인 / 확인서류 지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방문인원의 축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관련 협조요청에 근거하여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 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장치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 격리 대상자,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상이 있는 경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및 불응 시 2020.10.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4항에 의거 조치 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향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당첨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의 자격확인 서류제출 동호수 추첨 및 공급계약 일정은 향후 별도 고지할 예정입니다.
- 본 오피스텔은 대표전화 (☎ 042)825-5525)를 통해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모든 상담원이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자 청약자 본인이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자의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착오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 및 상품관련 등의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www.대전에테르스위첸.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 신청자 "만 나이 갖고 기준일은 최초 분양신고일(2022.11.02. 광고일과 다름) 기준입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선곡청약,청약통장 불필요)하며,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세대만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동일 타입에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 신청 전체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이 신청하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하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구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급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민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민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민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민지세법 시행규칙